

#1 아동학대의 신고의무

*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? 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)

: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⇒ **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 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**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.

⇒ **아이돌보미**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.

*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관련 벌칙 (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)

⇒ 정당한 사유 없이 **신고의무를 불이행** 할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#2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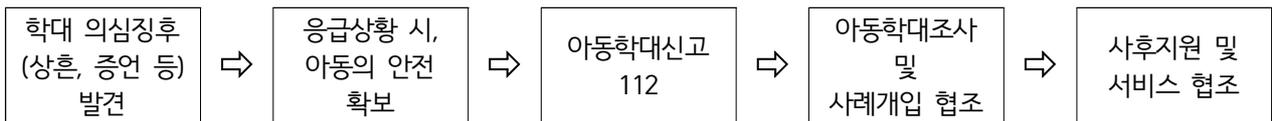
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(112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).

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을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보려는 관심어린 태도와 신고 자세가 중요합니다.

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한다면

피해아동이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#3 신고 절차



주의사항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,
가해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

유의사항

- 가능한 한 **증거사진** 등을 확보함.
-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**일상적**으로 대함.
- **성학대**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**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**.
- **진술의 오염**이 있으므로,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**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**

#4 신고 예시

1. 아동 대면 가능한 장소 정보 주소 가장 중요!	3. 아동의 인적사항: 이름, 성별, 나이, 특징
2.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/상황 응급상황여부 신속출동 판단 위해 구체적인 응급상황 설명 - 경찰: 10분 이내 우선 출동 가능	4. (의심되는) 학대행위자 모를 경우 '미상'으로 신고
	5. 신고자 요청 사항 면담 시 주의 사항, 신변 보호 요청 등